



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

-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1. 4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기획조정실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기획조정실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- 지난 2020. 8. 18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시행되는 '주택 임대차 신고제'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,
- 임대차 신고 등을 직접 접수할 각 동장의 권한을 사전에 정비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.

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(안 별표 3)
 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에서 정한 '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'에 관한 사항과
 - 같은 법 제6조의3에서 정한 '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'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.

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1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,
- 2021년 4월 5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본 조례안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'주택 임대차 신고제' 시행에 필요한 조례개정 사항을 사전에 정비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하오니,
-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0021039
--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1. 4.
제 출 자: 달서구청장
(기획조정실장)

1. 개정이유

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0. 8. 18.)에 따른, '주택 임대차 신고제'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의 관련권한을 사전에 정비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(안 별표2)
 -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
 -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-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(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)
- 같은 법 제6조의3(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)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21. 3. 11.~3. 31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행정규제 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

소관부서	일련번호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령	비 고
총무과	1	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연가계획 및 허가 나. 병 가 다. 공 가 라. 특별휴가	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12조 같은 조례 제15조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2 같은 조례 제16조	
정수과	1	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판매인 지정 나. 명의·위치변경 또는 판매폐지 다. 지정의 취소 라. 판매인의 승계 마. 판매 또는 그 동거가족의 신고 바. 증지교환 사. 장부비치 및 검사	「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」 제8조 같은 조례 제12조 같은 조례 제14조 같은 조례 제15조 같은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27조 같은 조례 제28조	
어르신장애인과	1	매·화장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매장·화장신고(단, 토요일·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구청에서 발급한다)	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및 제2항	
도시재생과	1	농지원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농지원부 작성비치 나. 농지원부 등본 열람교부 다. 거주지 이전 농지원부 송부	「농지법」 제49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	
교통행정과	1	이륜자동차관리업무 전반 (단, 번호부여지정 제외)	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 내지 52조	
	2	차고지설치확인(개별화물, 용달화물에 한함)	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5조	
토지정보과	1	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.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.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	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같은 법 제6조의3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[별표 2]					[별표 2]				
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					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				
소관부서	일련번호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비 고	소관부서	일련번호	위 임 사 무 명	근 거 법 령	비 고
<신설>					토지 정보과	1	<u>주택 입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</u> <u>가. 주택 입대차 계약의 신고</u> <u>나. 주택 입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</u>	<u>주택 입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</u> <u>가. 주택 입대차 계약의 신고</u> <u>나. 주택 입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</u>	<u>「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 한 법률」 제 6조의2</u> <u>같은 법</u> <u>제6조의3</u>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(신설 '20. 8. 18. 시행일 '21. 6. 1.)

제6조의2(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) ①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6조의3(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) ①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